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단의 자료 제공 의무규정 신설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14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단의 자료 제공 의무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2026년 2월 27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합니다. 반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심사청구의 심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해당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단의 자료 제공 의무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단이 확보한 보험급여의 심사·결정 등에 관련된 자료를 해당 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자료 제공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17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7조의2(공단의 자료 제공)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해당 보험급여의 심사·결정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근로자가 업무 도중 재해를 겪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는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함.¹⁾

그러나 재해 발생 당시의 근무 환경 등 업무상 재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해당 자료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이를 돕도록 하고 있고(제116조)²⁾, ②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에 관한 심리·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105조, 제114조, 제117조 및 제129조).³⁾

1)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

이 중 제116조제2항은 종전에는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최근 2026. 2. 19. 개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116조는 공단의 조사에 대한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제129조)과 달리 재해근로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행사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공단이 사업장에

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4조(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보한 자료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공단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근로자가 재차 구하여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단은 공단이 확보한 보험급여의 심사·결정 등에 관련된 자료를 해당 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자료 제공 의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해근로자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험급여 수급권 행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특히 공단은 관계인에 대한 질문, 의견 진술 요구, 감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바 해당 자료를 근로자가 제공받는 경우 재해근로자 입장에서 업무상 재해 입증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상으로도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 제117조제4항은 공단의 조사업무에 종사한 자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자료 요구를 받는 경우 제117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117조제4항이 자료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바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행법 조항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자료제공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제116조 개정이 최근 있었는바 재해근로자의 자료접근 곤란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자료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는 불복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오히려 개정안 시행의 경우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간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